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 개선 방안

김꽃송이 연구원, 강현미 부연구위원

현황 및 문제점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화재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높으며, 그 원인은 노인의 신체적·인지적 취약성, 화재안전 시설계획 및 안전관리 미흡, 피난조력자 부족 등으로 나타남
-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실태조사 결과, 스프링클러 등 화재 소화를 위한 물리적 환경은 대부분 구축되어 있으나,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화재탐지설비와 경보설비, 대피공간, 임시피난안전구역 등의 계획은 미흡하여 관련 시설계획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노인의료복지시설 소방특별조사(2018)에서 소방안전 분야의 지적사항은 전체의 51.6%(517건)를 차지하였으며, 주요 지적내용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됨
- 건설·소방·정책 분야의 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FGI)를 진행한 결과,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유지관리제도보다 시설계획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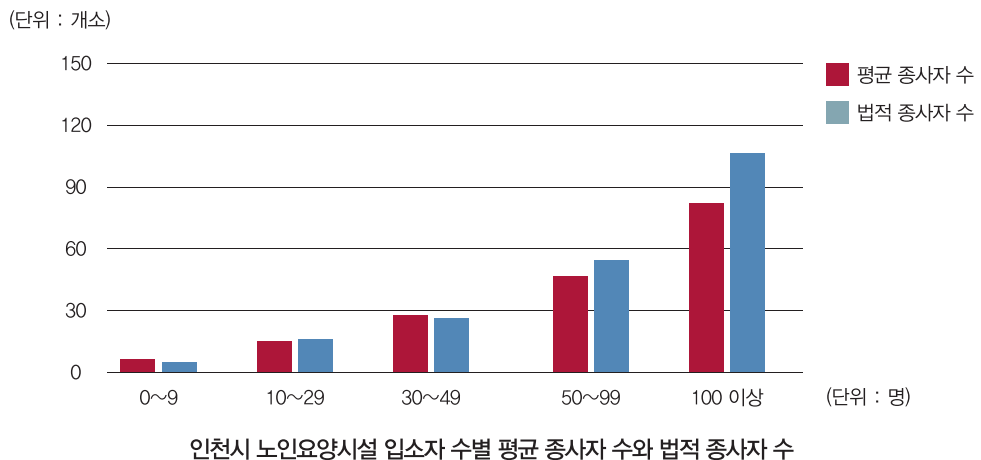
정책제안

- (화재안전 관리 강화방안) 기존 시설 화재안전 개선을 위해 소방특별조사 점검대상 선정방식 보완,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 강화, 소방훈련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
- (화재안전 성능 보강방안) 용도변경 시에도 현행 화재안전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법안 개정 방향, 기존 시설 화재안전 보강사업의 개선 방안 도출
- (화재안전 시설기준 강화방안) 사용자의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피난대응 시설계획기준 강화 방안 제안

1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피해 확대 원인 및 법제도 문제점 진단

■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피해 확대 원인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신체적·인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이 다수 입소하고 있어 화재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높음
 - 2017년 기준 의료·복지시설의 화재발생건수는 전체의 0.8%(386건)에 불과하나, 인명피해는 전체의 4%(87명)를 차지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노인들이므로, 화재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비율이 높음
- 노인의료복지시설 대규모 화재 사례의 피해확대 원인으로는 노인의 신체적·인지적 취약성, 화재안전계획 및 안전관리 미흡, 피난조력자 부족 등이 지적됨
 - 노인은 제한된 이동 능력과 치매, 청력 및 시력 감퇴, 언어능력 미흡 등 신체적·인지적 취약성으로 인해 화재 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대규모 인명피해를 발생시킴
 - 화재안전계획 및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에서 노인의 인명피해는 더욱 확대되고 있으나, 시설계획 및 안전관리가 미흡한 기존 노인의료복지시설 다수
 - 화재 시 노인의 피난을 지원할 수 있는 직원 인력도 법적 기준 대비 부족한 실정



※ 출처 : 보건복지부(2018), 「2018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pp.128-139 재구성

■ 국내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 대규모 화재피해사례 발생 이후 신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계획기준은 강화되었으나, 기존 시설의 화재안전 개선을 위한 시설계획기준은 미흡한 실정

- 정부는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2018년 이후 신축되는 모든 노인요양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방화구획, 배연설비 설치를 의무화
-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소방관 진입 창문을 표시하도록 법적 기준 마련
- 그러나 강화된 시설기준 제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화재안전 개선을 위한 법적 기준 부재하여 화재 위험에 노출

강화된 화재안전 관련 소방시설·건축계획 기준(일부)

소방시설·건축계획	개정 전 기준	개정 후 기준	
		기준	시행일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강화된 소방시설기준 적용 대상에 노유자시설 미포함	[신설 2011.10.28.] 모든 노유자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필요 [전문개정 2015.6.30.] 모든 노유자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필요	2012.02.05
방화구획 등	(노인요양시설에 방화구획 설치에 대한 기준 없음)	[신설 2015.09.22.] 노인요양시설은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거실에 직접 접속하여 바깥 공기에 개방된 피난용 발코니, 구름다리 형태의 구조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함	2015.09.22
배연설비	배연설비 설치 대상에 노인요양시설 미포함	[개정 2015.9.22.] 노인요양시설은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2015.09.22
소방관 진입 창문	(소방관 진입 창문 표시 규정 없음)	[신설 2011.12.30.] 11층 이하 건축물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함	2011.12.30

※ 출처 : 「소방시설법, 법률 제15419호(2018. 3. 2, 일부개정)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항, 직접인용; 「소방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22호(2018. 8. 28, 일부개정) 제15조의 6(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직접인용;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57호(2018. 12. 31,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6항,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제2항, 제4항, 직접인용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화재대응뿐만 아니라 피난대응을 위한 시설계획이 중요하나, 현재 국내 법규에는 피난대응을 위한 시설계획기준은 미흡한 실정
- 부처 및 지자체는 기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화재안전 개선을 위해 기능보강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나, 화재안전 성능 측면에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
 - 대표적인 기능보강사업인 배연창 설치사업의 경우, 배연창 설치위치가 제한적이며 소규모 시설에서는 배연창의 작동성, 연기감지기와 연동 효과 미흡
- 국내 법규에는 화재안전 유지관리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점 제기
 -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는 대행으로 이뤄지거나 소방시설에 대한 전문성 및 이해도가 부족한 시설관계인이 시행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우려
 - 자체점검을 대행으로 운영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소방안전 전문가가 시설에 상주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소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

2 국내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실태 및 화재취약유형

■ 화재안전 실태조사 방법

- 정량적 조사(체크리스트 조사) : 체크리스트 조사지를 배포·수집하여 도심지 노인 요양시설 240개의 화재안전 시설계획요소 분석¹⁾
- 문헌조사(현장감찰결과 분석) : 소방특별조사²⁾ 시 주요 지적사항으로 제기되었던 화재안전 시설계획요소 및 유지관리제도 분석
- 정성적 조사(인터뷰) : 체크리스트 조사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화재안전 시설계획 및 유지관리제도 운영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건설·소방·정책 등 각 분야의 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FGI) 시행
- (분석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화재안전 시설계획 및 유지관리제도 운영현황을 분석

유지관리제도와 시설계획요소 분석내용

화재안전계획 구분		분석내용*
유지관리제도	예방	- 인력 - 소방특별조사 -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 소방계획서 - 소방훈련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 피난계획
시설계획요소	대응	
	화재 대응 피난 대응	-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 - 배연설비, 배연창 - 소화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 단독경보형감지기 - 방화구획 - 직통계단 - 피난기구 - 가스누설경보기 - 유도등 - 내화구조

* 국내 건축물 화재안전 법규에 나타난 유지관리제도 및 시설계획요소 기준을 토대로 분석항목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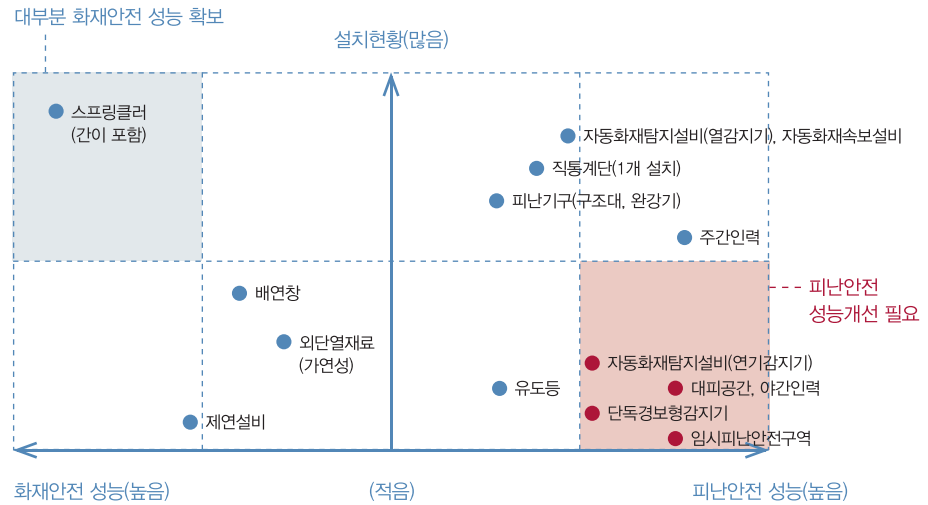
※ 출처 : 아일랜드(연도미상), Guide to Fire Safety in Existing Nursing Homes and Similar Type Premises, 아일랜드, p.3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1)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 실태조사는 예비조사로 시행한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반영하여 조사지역 선정. 전문가 인터뷰는 소방 전문가(교수) 1인, 안전감찰 담당 공무원 2인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전문가 인터뷰 결과 노인요양시설 화재취약지역은 복합건물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도심지로 나타남. 이에 실태조사 대상을 도심지 노인요양시설로 선정

2) 소방특별조사는 전국 지자체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 재가, 의료)의 약 20~25%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장감찰제도로, 점검결과에 신뢰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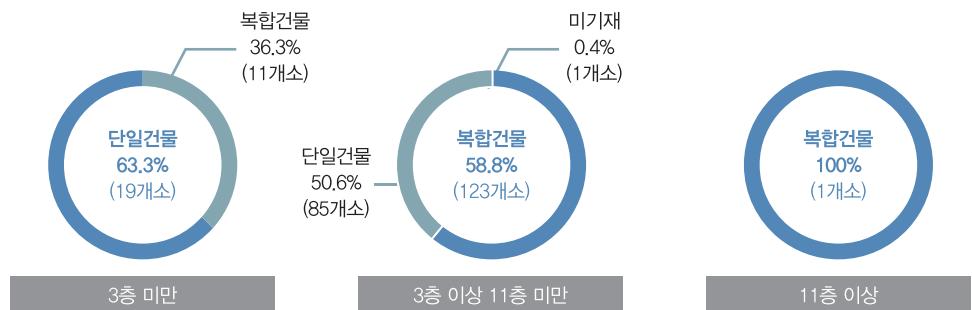
■ 화재안전 실태조사 결과

- (체크리스트 조사결과) 국내 노인요양시설은 화재 소화를 위한 물리적 환경은 대부분 구축되어 있으나,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계획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기존 노인요양시설은 화재안전 성능 확보를 위한 스프링클러 등 화재소화 설비는 대부분 설치되어 있으나,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화재탐지설비와 경보설비, 대피공간, 임시피난안전구역 등의 시설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 체크리스트 결과 분석

- 노인요양시설은 복합건물에 위치한 시설이 전체의 56.2%(135개소)로, 단일건물 43.3% (104개소)에 비해 많으며, 3층 이상의 고층 건물에 위치할수록 복합건물인 경우 다수
 - 3층 미만의 저층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복합건물보다 단일건물에 위치한 경우가 더 많으며, 3층 이상의 고층 건물일수록 복합건물에 위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3층 이상의 복합건물에 위치한 시설의 경우 피난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다 강화된 화재안전 시설계획 및 유지관리제도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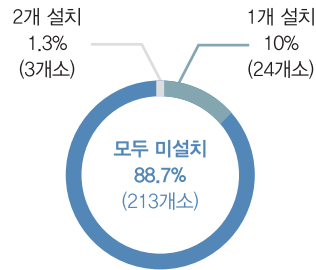


건물 층수별 건물 유형(복합건물, 단일건물 현황)

※ 출처 : 연구진이 지자체에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수집한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 실태조사 결과 240건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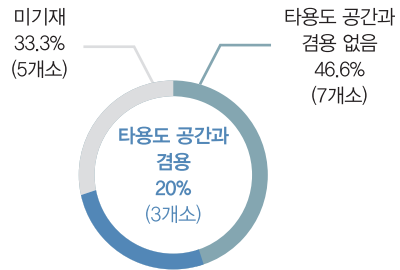
- 조사대상 중 88.7%(213개소)는 수평피난을 위한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대피공간을 설치한 시설 중 타용도 공간과 겸용되어 사용되는 대피공간은 20% (총 15개 시설 중 3개소)로 나타나 화재 시 피난경로로 활용 가능한 대피공간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
- 대피공간이 주로 직통계단(2개소), 홀(2개소), 샤워실(2개소)에 설치되어 있어 실제 화재안전 성능을 구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파악



대피공간 설치 현황

※ 출처 : 연구진이 지자체에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수집한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 실태조사 결과 240건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대피공간 '설치'시설 중 타용도 공간과 겸용으로 사용되는 대피공간 현황

※ 출처 : 연구진이 지자체에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수집한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 실태조사 결과 240건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 (현장감찰내용 분석결과) 기존 노인의료복지시설 소방특별조사 시 소방안전 분야의 지적사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소방특별조사에서 화재안전과 관련된 점검부문은 안전교육, 책임보험, 소방안전, 기능보강 총 4개 부문이며, 이 중 소방안전과 관련된 지적사항은 51.6%(517건)를 차지
-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및 불량, 소화기 비치 부적절,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미설치, 비상조명등 및 유도등 불량, 불필요한 적치물 방치 등이 제기됨
- 기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소방특별조사의 주요 지적내용의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2018년도 하절기 소방특별조사 화재안전 부문 지적내용

부문	안전교육	책임보험	소방안전	기능보강	총계
지적 건수	276	22	517	186	1,001

※ 출처 : 보건복지부(2018), 2018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세종; 보건복지부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분석 및 작성

- (FGI 결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유지관리제도보다 시설 계획요소 설치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유지관리제도 운영은 유동적이므로, 화재안전 시설계획이 일정 수준 갖춰진 이후 유지관리제도를 통해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다수 제기
 - 화재안전 시설계획이 미흡한 기존건축물의 경우 ‘기능보강사업’ 지원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화재취약유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재취약유형의 경우 보다 집중적인 안전관리와 시설보강이 필요
 - 인터뷰 결과 시설 층수, 복합건물-단일건물 여부 등에 따라 화재취약유형이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보강 시 화재취약유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제도 운영에 효과적이라는 의견들이 다수 제기됨

FGI 응답자별 의견(일부)

● 전문가 ● 공무원 ● 시설관계자

질문	답변	응답자 구성	세부의견
시설계획요소와 유지관리제도의 상대적 중요성	시설계획이 더 중요함	●●●●●	(전문가) 유지관리제도는 개선 자체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며, 시설장의 의지에 달린 문제로 시설계획이 더욱 중요함 (시설관계자) 초기에는 시설계획이 중요하며,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능보강사업으로 보완하는 중요함
	유지관리가 더 중요함	●●	(시설관리 공무원) 스프링클러 등의 설비가 가장 확실한 화재 안전 확보방법이지만,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지관리가 중요함
유지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 여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의견 없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음	●●	(소방안전 전문가) 시설 점검의 전문성이 떨어져 비효율적이며, 공무원의 감찰 수준에 따라 점검 수준이 높아짐
	기타	●●	(정책 공무원) 훈련과 자체점검을 실시하지만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음
화재안전 취약 건물유형 입지 구분 방식의 필요성	도심지-비도심지	●●	(소방공무원, 시설관계자) 도심지가 화재에 더 취약함 단, 소방안전 전문가는 도심-비도심 유형구분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소방서 입지-출동시간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당 항목만 가지고 구분하기 어려움)
	3층 이상-3층 이하	●●	(화재안전 건설기술 전문가) (시설관계자)
	복합건물-단일건물	●●●●●	(소방안전 전문가) (소방공무원) (시설관리공무원) (정책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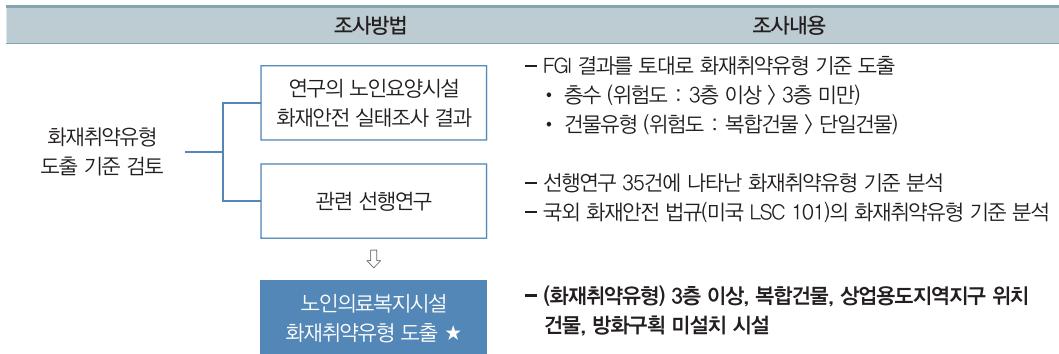
*시설관계자에게는 질문하지 않음

※ 출처 : 전문가(화재안전 건설기술 분야 1인, 소방안전분야 1인), 공무원(소방안전분야 1인, 시설관리분야 1인, 정책분야 1인), 노인의료복지시설 관계자(대전시 시설대표1인, 의정부 시설대표 1인)를 대상으로 2018년 9월 15일부터 2018년 10월 29일까지 실시한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

■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취약유형

- 우선적으로 화재안전을 개선해야 할 노인의료복지시설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화재 안전 실태조사 결과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화재취약유형 도출
 - 화재취약유형 도출 목적이 화재안전 확보가 시급한 시설 유형을 파악하는데 있으므로 시설의 입지특성, 시설계획요소를 기준으로 화재취약유형 분석
 - (노인요양시설 화재취약유형) 분석결과 3층 이상, 복합건물, 상업용도지역지구에 위치한 건물, 방화구획 미설치 시설이 화재취약유형으로 도출됨

화재취약유형 도출방법



주1) 구글, 'elder evacuation', 'older evacuation', 'disaster evacuation', '요양시설 피난', '고령자 화재피난', 구글 웹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 www.google.com, 총 34건 선행연구를 수집

입지 특성	3층 미만 단일건물 상업용도지구 외 용도지구	3층 이상 복합건물 상업용도지구
시설 계획 요소	화재대응 방화구획(피난경로 분리) 설치 O 피난기구 설치 O 경보설비 및 연기제어설비 설치 O 화재대응 스프링클러 설치 O 내화성능(불연성 외장재) O	화재대응 방화구획(피난경로 분리) 설치 X 피난기구 설치 X 경보설비 및 연기제어설비 설치 X 화재대응 스프링클러 설치 X 내화성능(불연성 외장재) X

□ : 화재취약유형 기준 위험도 (낮음)

□ : 화재취약유형 기준 위험도 (높음)

화재취약유형 기준 분류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 실태조사 결과 종합

구분	화재안전 계획 구분	국내 법제도 화재안전 기준	실태조사 결과			제도 개선 방향
			정량적 조사 (체크리스트 조사)	정성적 조사 (인터뷰)	문헌조사 (소방특별조사 결과)	
유지관리제도	예방	인력	주간인력의 경우, 법적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야간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	직원의 화재안전 대응 역량이 중요	-	-
		소방특별조사	-	모든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시행하기에는 인력의 한계가 있으므로, 화재취약유형을 설정하여 집중관리할 필요	-	CASE 1
		자체점검(작동기능 점검, 종합정밀점검)	-	화재안전 시설계획이 충족되어 있는 경우, 작동기능점검이 중요	-	-
		소방계획서	-	-	소방계획서 (안전관리 계획) 작성 미흡	-
		소방훈련	-	소방훈련 참여자 및 운영방식 개선 필요	소방교육훈련 미 실시 및 횟수 부족	CASE 1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기준 개선 필요	-	-
		피난계획	-	-	-	-
		불필요한 적치물 방치	-	-	불필요한 적치물 방치 시설 도출	CASE 1
시설계획요소	화재 대응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1.7% 간이스프링클러 또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대부분의 노인요양시설에는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됨	스프링클러 미설치 및 불량시설 도출	CASE 2
		배연설비, 배연창	42.1% 배연설비 미설치. 다만, 배연설비는 인명안전을 확보하기에 적합한 시설은 아님	배연창의 화재안전 성능에 대한 의견이 상이	-	CASE 1
		소화기	-	-	소화기 비치 부적절 및 노후소화기 미교체 등 관리 소홀시설 도출	CASE 1
		내화구조	외단열재는 가연성(32.9%)이 불연성(9.2%)보다 다수. 다만, 외장재 보강은 화재안전 확보 우선순위에서 하위권임	-	-	-
	피난 대응	자동화재탐지설비	0.4% 미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대부분의 시설에 설치됨	자동화재탐지설비 미설치시설 도출	CASE 2
		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화재속보설비 7.5% 미설치, 단독경보형감지기 99.6% 미설치, 경보설비 보강 필요	-	자동화재속보설비 미설치시설 도출	CASE 2
		가스누설경보기	-	-	-	-
		대피공간 등(방화구획된 대피공간, 피난용발코니, 구름다리)	88.7% 대피공간 미설치, 대피공간 설치 시설 중 타용도와 겸용하고 있는 시설 20%	방화구획은 화재안전에 중요한 계획이므로, 적용 확대 필요	-	CASE 2
		직통계단	직통계단은 대부분 설치되어 있었으며, 2.5% 시설만 직통계단 미설치	계단 등의 수직피난경로는 노인의 피난안전 확보에 무용함	-	-
		피난기구	10.6% 미설치, 다만 구조대, 완강기는 노인의 피난안전을 확보하기에 실효성이 떨어짐	대피용리프트 피난기구는 복합건물에는 설치하기에 한계, 구조대는 이용 시 노인이 다칠 위험이 있음	-	CASE 3
		유도등	8.3% 설치	-	비상조명등 및 유도등 불량, 휴대용 조명 미설치시설 도출	-

* CASE 1.: 화재안전 관리제도 강화가 필요한 항목
CASE 2.: 기존 시설 화재안전 성능 보강이 필요한 항목
CASE 3.: 화재안전 시설기준 강화가 필요한 항목

3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제도 개선 방안

■ 화재안전 관리 강화 방안

-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취약유형을 토대로 소방특별조사 점검대상 선정
 - 화재안전 실태조사에서 기존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확보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소방특별조사 제도가 도출
 - 그러나 소방특별조사는 인력 한계로 인해 무작위추출을 통해 약 20~25%의 표본조사로만 시행되고 있는 실정
 -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취약시설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할 경우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E 지자체 화재취약시설 현황

	총계(개소)	비율(%)
노인요양시설 수	75	100
화재취약유형(3층이상+복합건물+상업지구 내+방화구획 미설치 시설)	32	42.67

※ 출처 : 연구진이 지자체에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수집한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 강화
 - 소방특별조사에서 조치명령을 받은 시설들이 이행강제금을 내고 시설운영을 지속할 수 있으므로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가 필요
 -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들에 한해서는 영업중지 조치 또는 시설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법」 제5조(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법안을 개정할 필요
- 소방전문가·직원·시설장·입소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소방훈련제도 개선
 - 현행 소방훈련제도는 운영방식 및 횟수 측면에서 실제 화재 시 대응할 수 있는 훈련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입소노인이 직접 소방훈련에 참여하는 경우는 미미한 상황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피난약자시설이며 입소자의 대부분이 신체적·인지적 능력이 취약한 노인이므로, 화재 발생을 가정하여 실시하는 소방훈련이 매우 중요
 - 이에 현 ‘노인의료복지시설 소방훈련제도’를 소방공무원(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직원·시설장·입소노인이 함께 참여하는 소방훈련제도로 개선할 필요

■ 화재안전 성능 보강 방안

- **현행 화재안전기준과의 적합성 확인제도 강화**
 - 국내는 대규모 화재사례 이후 화재안전시설기준이 강화되어 앞으로 신축 또는 증축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일정수준 이상의 화재안전 성능 확보 가능
 - 그러나 기존 시설을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이 미흡한 실정
 - 이에 모든 노인의료복지시설이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등) 법안 개정 필요
- **화재취약유형에 우선하여 기존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계획 보강 지원**
 - 최근 부처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기능보강사업은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시설보강을 시행하기보다 지자체 의지에 따라 각기 다른 보강공법을 지원하는 경향
 - 화재안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시설마다 시설계획 현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 여건을 고려한 보강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됨
 - 시설 여건을 고려한 기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화재안전 보강을 위해서는 건축분야 민간전문가가 공사감리·기술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기능보강사업과 연계하여 시설을 개선할 필요
 - 이때 기능보강사업은 화재취약유형에 우선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

■ 화재안전 시설기준 강화 방안

- **신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피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계획기준 강화**
 - 노인요양시설은 화재대응뿐만 아니라 피난대응을 위한 시설계획이 중요하나, 국내 법규에는 피난대응을 위한 시설계획기준 미흡
 - 화재안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대피공간을 설치한 시설 중 타용도 공간과 겸용되어 사용되는 대피공간은 20%(총 15개 시설 중 3개소)로 나타났으며, 대피공간이 주로 직통계단(2개소), 홀(2개소), 샤워실(2개소)에 설치되어 있어 실제 화재안전 성능을 구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파악
 - 이에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6항의 ‘1.방화구획된 대피공간’의 최소면적, 설치위치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제도 개선 방안

목표	개선 방향	제도 개선 방안	
		적용대상	방안
1. 화재안전 관리 강화	화재취약유형을 토대로 현장 감찰대상 선정	모든 건축물	'노인복지시설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기준 마련(안) • (선정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취약시설(3층 이상 시설, 복합건물, 상업지구 내 시설, 대피공간 미설치 시설)
	소방특별조사 운영방식 개선	모든 건축물	「소방시설법」 제5조(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법안 개정(안) • (개정방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영업 중지 조치 또는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소방훈련제도 개선	모든 건축물	'소방훈련제도' 운영체계 개선(안) • (찾아가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소방안전교육 시범사업 운영) 소방전문가 · 직원 · 시설장이 함께 참여하는 소방훈련제도로 운영
2. 화재안전 성능 보강	현행 화재안전기준과의 적합성 확인제도 강화	모든 건축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등) 법안 개정(안) • (개정방향)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시 시설이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건설되었는지 확인
	화재취약유형에 우선하여 시설 계획 보강	기존 건축물	'지역건축안전센터' 연계를 통한 기능보강사업 운영방안(안) • (보강방법)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시설 여건을 고려한 보강방안 자문 시행 • (보강대상) 모든건축물, 다만 우선순위가 필요할 경우에는 화재취약 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선 • (운영체계)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화재취약시설을 민간전문가 - 공무원이 상시점검하고, 해당 시설의 여건에 적합한 보강방안 제시, 지자체 기능보강사업 예산 · 운영 지원
3. 화재안전 시설기준 강화	피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계획기준 강화	신축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기준 개정(안) • (개정방향) 대피공간 면적기준, 설치위치 등 세부기준 마련

김꽃송이 연구원 (044-417-9634, ksikim@auri.re.kr)
 강현미 부연구위원 (044-417-9648, hmkang@auri.re.kr)



관련 보고서 원문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발행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발행인 박소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층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7 www.auri.re.kr

